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2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4. 선고 (인천)2025누101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따라 2018. 7.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8.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4. 8.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

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이집트 형사재판 판결문들(갑 제8호증의1, 제9호증의1,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라 한다)은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집트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원고 진술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가) 원고가 제출한 첫 번째 판결문(갑 제8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화염병을 소지하고 운반하였으며, 시의회 소유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3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문(갑 제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폭발물로 간주되는 물질을 소지하고 통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정부 소유의 전력선을 손상시킬 목적으로 그 폭발물을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8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혐의사실의 내용,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형량선고 등에서 내용상 모순된 부분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첫 번째 판결문에는 '2016/41, 2016/6'이라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장(갑 제25호증의1)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일치한다. 위 판결문에는 재판장과 군검사, 법원 서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면에는 판결문의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국제인권에 관한 비정부기구인 정의위원회(Committee for Justice)가 운영하는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Justice Watch Archive)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과거 다른 이집트 국민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던 판결문들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라) 원고는 시위 가담 정도와 횟수, 유죄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량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마) 원고는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된 후 수단으로 도망쳤고, 이후 이집트 변호사로부터 두 번째 궐석재판 선고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으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결문들과 수사보고서, 재판기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판결문 등의 서류를 입수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 역시 원고가 처한 상황이나 경험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바) 이집트 난민신청인에 대한 판결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래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가 활용되었으나, 최근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과거에는 주재국 법원 및 검찰청 등을 방문하여 사실조회 요청사항을 확

인 후 회신해 왔으나, 대사관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주재국 정부의 몇 차례 비공식적인 항의가 있어 왔으며, 2022. 2. 주재국 정부에서는 정식 외교통로를 통해 사건문의를 진행해 줄 것을 공한으로 요청하기에,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대사관에서는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저스티스 워치 아카이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위 판결문들의 진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비해 공신력 면에서 부족한 사정이기는 하다. 다만 위 단체의 국제법적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대사관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사이트에 등재되는 과정상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된다는 사정을 제한적이나마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난민인정을 받은 다른 이집트 난민신청인들의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작위적이지 않은 점, 원고가 위 판결문들을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점 등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이집트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문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외국의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

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